

의안번호	2210728
의 퇴 인	김용민의원
회 답 일	2025.7.28.
추계번호	25D3099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공소청)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공소청을 두고, 지역공소청 소속으로 지청을 둘 수 있음 - 공소청의 위치와 지역공소청 및 지청의 설치, 명칭과 위치 및 그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공소청장)	-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함 - 공소청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	의무규정
3	안 제7조(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	- 법무부에 공소청장추천위원회를 둠 -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과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포함	의무규정
4	안 제8조(차장)	공소청에 차장을 둠	의무규정
5	안 제9조(직제)	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6	안 제10조(지역공소청장)	지역공소청에 지역공소청장을 둠	의무규정
7	안 제11조(지청장)	지청에 지청장을 둠	의무규정
8	안 제12조(지역공소청과 지청의 차장)	지역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을 둠	의무규정
9	안 제13조(직제)	지역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10	안 제14조(공소청, 지역공소청, 지청 검사)	공소청, 지역공소청 및 지청에 검사를 둠	의무규정
11	안 제24조(검사인사위원회)	-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 -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을 포함	의무규정
12	안 제26조(정원)	검사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9조(검사 적격심사)	- 검사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둠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을 포함	의무규정
14	안 제34조(공소청 직원)	공소청 직원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15	안 제37조(공소심의위원회)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정원 9인, 외부 위원이 과반인 공소심의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16	안 제39조(공소청 감찰위원회)	-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청 감찰위원회를 둠 - 공소청 감찰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공소청)	미대상: 현행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으로 구성된 검찰청을 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의 구조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2	안 제5조(공소청장)	미대상: 제정안 부칙 제3조에서 시행 당시의 검찰총장은 이 법의 공소청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3	안 제7조(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	미대상: 현행 「검찰청법」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반면, 제정안의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민간위원 수가 감소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4	안 제8조(차장)	미대상: 현행 「검찰청법」의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응되는 공소청 차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5	안 제9조(직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10조(지역공소청장)	미대상: 현행 「검찰청법」의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에 대응되는 지역공소청장과 지청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7	안 제11조(지청장)	
8	안 제12조(지역공소청과 지청의 차장)	미대상: 현행 「검찰청법」의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에 대응되는 지역공소청과 지청의 차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9	안 제13조(직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0	안 제14조(공소청, 지역공소청, 지청 검사), 안 제26조(정원), 안 제34조(공소청 직원)	미대상: 제정안 부칙 제4조에서 시행 당시의 검사 및 검찰청직원은 이 법의 공소청 검사 및 공소청 직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과 달리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검사 및 직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11	안 제24조(검사인사위원회)	미대상: 제정안의 검사인사위원회는 현행 「검찰청법」의 검찰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2	안 제29조(검사 적격심사)	미대상: 현행 「검찰청법」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등 5명의 민간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른 검사적격심사위원회도 5명의 민간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3	안 제37조(공소심의위원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4	안 제39조(공소청 감찰위원회)	미대상: 현재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

2. 상세 사유

□ 공소청, 지역공소청 및 지청의 직제(안 제9조, 제13조)

- 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지역공소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도록 규정하여 기존 검찰청 조직 재설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제정안이 공소청, 지역공소청 및 지청의 분장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조직구조, 분장사무 및 조직 재설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공소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7조)

-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설치되는 공소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고 외부 위원을 과반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외부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참고로, 2025년 기준 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25만원¹⁾임
- 다만, 공소심의위원회는 기소 및 불기소 적정성, 영장청구 등에 관한 적정성, 검사의 각종 처분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데, 이에 따른 연간 회의 개최 횟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또한,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 조직, 권한, 운영 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참고로, 연도별 검찰청의 기소 및 불기소 사건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표 1] 연도별 기소 및 불기소 건수: 2020~2024년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소		2,215,577	2,084,164	2,074,336	2,177,050	2,473,924
불기소	소계	1,291,658	477,541	498,582	507,028	539,701
	무혐의	317,251	85,493	79,957	86,707	91,972
	기소유예	217,206	197,405	220,235	203,312	190,777
	기소중지	264,868	77,564	83,471	80,866	79,294
	참고인증지	7,153	1,016	700	630	547
	각하	171,110	40,109	39,543	52,654	71,623
	기타	314,070	75,954	74,676	82,859	105,488
보완수사요구		—	199,901	157,801	149,205	160,194
이송		261,842	229,363	198,258	206,796	243,848
불제사건 ²⁾		—	468,216	513,559	573,702	750,992
중제사건 ³⁾		—	102,596	97,300	100,424	125,273

자료: 법무부, 2025년 법무연감 (2025. 07. 01)

2) 불제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고 종결한 사건

3) 중제사건: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